

# 결정서

사 건 : 96-27 재임용탈락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성 명 : 김명호 (전)직위(명) : 조교수


(전)소속 : 성균관대학교

피청구인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3.3.1.부터 1996.2.29.까지 임용기간을  별시 종로구 소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여 오던중 성균관대학교 제9차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1996.3.1. 재임용되지 않은 바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성없는 논문심사를 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는데 제출된 논문은 세계 유수의 잡지에 게재된 것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보기 어려우니 대한수학회나 타 일류대학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당한 심사와 재임용탈락 이유는 청구인과 수학과 교수들의 사사로운 감정대립과 그에 편승한 학교의 편파적인 행정처리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임용 탈락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의 "재임용탈락 취소 청구"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